

## 아역 연기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려사항

황준원<sup>1)</sup> · 김봉석<sup>2)</sup> · 유희정<sup>3)</sup> · 반건호<sup>4)</sup>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sup>1)</sup>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sup>2)</sup>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sup>3)</sup>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sup>4)</sup>

###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Child Actor

Jun-Won Hwang, M.D., Ph.D.<sup>1)</sup>, Bongseog Kim, M.D., Ph.D.<sup>2)</sup>,  
Hee-Jeong Yoo, M.D., Ph.D.<sup>3)</sup> and Geon Ho Bahn, M.D., Ph.D.<sup>4)</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sup>2)</sup>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sup>3)</sup>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up>4)</sup>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hild labor is being recognized as the key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e that children are individuals with dignity and rights.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belong to a profession with wide public exposure and there is a potential danger of invading classes and roles not matching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future complementary measures surrou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child actors. Although the basic rights for child workers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2 Paragraph 5 and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64 through 70, they are insufficient. Following the revised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amend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sever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working environment. In certain foreign places such as California, United States,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of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protecte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reinforced, more consistent devices are needed. Consideration for working hours, regulations to keep up with learning while working, and preparation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fluences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changes.

**KEY WORDS** : Logal Consideration · Institutional Consideration.

## 서론

20세기 후반 들어서 아동의 노동은 결사의 자유, 단체결사의 권리, 강제노동의 금지, 직업과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처럼 인권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5-17세 사이의 소아청소년 중 2억 1천 5백만 명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sup>1)</sup>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2조에서는 1)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sup>2)</sup>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제재수단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2)</sup>

이에 발맞추어 ILO는 1992년부터 국제아동노동철폐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을 통해 2016년까지 아동노동근절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계에서 1억 이상의 아동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수행되는

접수완료 : 2013년 5월 14일 / 수정완료 : 2013년 6월 3일

심사완료 : 2013년 6월 11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Geon Ho Bah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872, Korea

Tel : +82.2-958-8543, Fax : +82.2-957-1997

E-mail : mompeian@khu.ac.kr

성격이나 상황이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윤리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을 최악의 노동형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sup>3)</sup> 1991년부터 한국이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도록 요구하고, 아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가입국은 5년마다 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sup>2)</sup>

아역 연기자는 아동노동 중 가장 대중에 노출도가 높은 형태의 하나로 국제법상 간주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역할수행 중 할당된 배역·촬영경과·대본이 아동의 발달수준과 부합되지 않거나, 주어진 대본과 별도로 사용되며, 촬영에 지나치게 시간소모가 많고 야간작업이 있으며, 길고 집중적인 작업특성이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sup>4)</sup> 본고에서는 아역 연기자의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고려점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과 제도 및 향후 대두되는 보완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아역연기자와 관련된 국내의 주요 법과 제도

우선 아동의 노동과 관련된 주요 법 조항으로 국내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 5항과 근로기준법 제64조-70조(연소자 보호규정)을 들 수 있다. 헌법상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5)</sup>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장에서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에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65조에서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66조에서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67조에 의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70조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아동노동자로서 기본적인 법률과 더불어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2008-2012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발맞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아역연기자와 관련된 노동환경의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제4차 청소년정책에서는 분야 I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권리증진의 일환으로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를 신규과제로 내놓고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련부처 중 문화부는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규정이 포함된 연예산업 관련법제정 추진을 지원하고, 문화부와 공정위는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호조항을 포함시키며,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정비 및 관련심의규정의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문화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산업에 대한 정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중문화예술인·방송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 및 권리구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활동 및 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개발·운영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선정성 및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대상화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와 주요방송사 등 언론매체 간 공동캠페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sup>7)</sup>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45조의 6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2012년 9월자로 개정예고하고 있다.<sup>8)</sup> 또한, 2012년 10월자로 입법예고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연예인을 성적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마.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신설하고 있다.<sup>9)</sup>

청소년 연예인 활동 및 인권과 관련되어 2010년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합동으로 조사한 UN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이 드라마 출연시 계약서 없는 활동과 비합리적인 출연료책정, 이동비도 되지 않는 금액을 출연료로 지불하면서, '좋은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함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주연 또는 조연이 아닌 아동출연자들에 대한 계약서작성을 의무화하고 아동을 계약의 주체로 인정할 것, 연예기획사의 아동연예인 중개수수료의 합리적인 기준 및 합리적인 출연료 산정의 공정거래안 제시, 연예기획사의 역할 중 중개기획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규정확충,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기준법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sup>10)</sup>

### 아역연기자와 관련된 해외의 주요 법과 제도

아역 연기자의 법적 권한과 관련되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령체계가 상이하지만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은 참고할 만하다. 먼저 아역 연기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유명한 법률로 Coogan's Law가 있다. 이 법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The Kid)'에서 아역으로 유명하였던 재키 쿨건(Jackie Coogan)이 성인기에 부모가 자신의 그간 수입을 거의 다 탕진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1939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한 것을 유래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동의 사용자가 아역 연기자의 전체 수입 중 15%를 신탁자산에 맡겨야 하고 부모에 의한 무단사용을 법적으로 절도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sup>11)</sup>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캘리포니아주 아동 노동 보호(child labor protection)하에 있는 것으로 두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교육권과 관련하여 6-15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인가대안학교에 출석하거나 개인교습을 받거나 결석과 관련된 승인상태에 있거나 다른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일 학교출석을, 16-17세의 경우 정규고용은 적어도 주 4시간, 비정규고용은 주 15시간 부분수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고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연령별 작업시간 및 종사직종에 대한 규제방안도 세부적으로 지시되어 있다.<sup>12)</sup>

아역 연기자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가 연예사업종사를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서에는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전체 요청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학령기의 아동은 학교 당국자가 지원서 또는 학업성취도 및 출석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출생증명서 등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개월 이하의 영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연령증명서 및 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강하고 활

영상황에서 호흡기, 안과, 심장, 면역체계상 건강할 것임을 입증하는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고는 영화촬영장에서 고용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맡은 배역을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신체검진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영화촬영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 시행되는 프로덕션에는 적절한 수의 촬영소교사가 제공되어야 하며, 연예계사용자는 노동청에서 미성년자고용과 관련된 승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연예사업종사를 위한 결석허용일수는 연간 5일 이내이며, 이를 보충할 만한 과제와 평점을 추가적으로 받거나 노동청장이 승인한 촬영소교사에 의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는 연예사업에 종사할 때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평일에는 노동가능 시간대가 오전 5시-오후 10시 사이, 휴일 전날에는 오전 5시-오전 12시 30분으로 제한된다. 48시간 이전에 제출된 요청서에 따르는 노동청장의 허가하에 8-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오후 10시-자정까지 '발표, 연극,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다. 식사시간은 작업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동, 가정에서의 분장에 걸리는 시간은 작업시간으로 간주되며, 당일작업 종료 후 12시간이 지나야 다음 날 작업에 임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지령(directive) 제94/33와 발맞추어 아동의 노동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 지령에 따르면 아동에서의 고용허가는 특정요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주어지고, 아동고용이 절대로 학교출석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교육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정서적, 신체적 온전성 및 전반적인 안녕에 위해가 가해져서는 안 되는 책임을 지며, 참여하는 활동에는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교육적 상황, 아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유형과 빈도, 요구되는 시간, 장소, 참여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sup>13)</sup>

또, 13세 이상이 가벼운 작업을 하루 2시간 이하로 하고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 승인할 경우 공적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3-6세 아동의 경우 비디오촬영이나 오디오녹음을 할 때는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에 연습시간을 포함 최대 하루 2시간, 6세 이상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 최대 하루 3시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작업종료 후 14시간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 2세 이하는 이러한 작업에 여하를 막론하고 참여할 수 없다. 14세 이하의 아동은 연 40일, 그 이상은 연 80일 이상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BBC) 외 방송사의 공적규제기관인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에서 내놓은 The Ofcom Broadcasting Code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연루되는 18세 미만인

자의 신체적, 정서적인 복지와 존엄성에 대해 정당한 보호조치가 행해져야 하며 이는 참가자나 보호자 또는 부모 입장에서 18세 이상인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동의와도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에게 프로그램의 참가 또는 방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과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권익을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sup>14)</sup>

공영방송인 BBC의 경우 BBC Trust가 자율심의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콘텐츠제작과 방송기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체적 및 정서적 복지와 존엄성(dignity)을 보호해야 하고, 이는 본인, 부모, 후견인, 기타 부모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성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익과 안전이 어떤 편집요구사항보다 우선해야 하는 점을 OfCom에서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근심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참여는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출연 동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출연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제공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15)</sup>

## 아역연기자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보완점

2011년에 ILO에서 발간한 'Report of the Pilot Research Project on Children Working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는 터키에서 발표되었으며, 아동이 문화예술활동에서 겪는 여러 부정적인 노동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관련된 다양한 인력들로부터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시사점이 크다.<sup>4)</sup>

먼저 동료 성인 배우들은 아역 연기자에게 부정적인 환경으로 지나치게 긴 촬영기간, 장면 사이에 긴 대기시간, 야간작업, 놀이·휴식·식사·수면 등 아동의 기본요구에 대한 시설의 부재, 혹서나 혹한환경 등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촬영진에게 아동의 발달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전달, 아동에게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의사소통하지 않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발달전문가나 창의적인 드라마 지도자 또는 연기코치 등이 배석하지 않음, 일부 배역이 아동의 심리 및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음 등의 요인을 들었다.

아동의 연가지도자들은 잠재적인 아역 연기자들이 조합의 지도감독하에 승인된 능력 있는 자에게 연기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가족은 작업환경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해 고지를 받고 아동의 권리에 저촉되는 것을 예방할 책임을 지니며 제작자는 위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문서를 남겨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환경에서는 앞서 언급된 것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한 간호사 및 구급차를 확보해야 하고, 아역 연기자의 장면에 교육적, 심리

적, 신체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연령에 특수한 문화적, 신체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들었다.

아역 연기자 캐스팅 대리인들은 가족들에 대해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식사, 착탈의, 기타 아동의 기본육구와 관련된 사항에 가족이 동행할 것,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 연기에 흥미를 잃는 아역 연기자에 대해 가족이 잘 대처할 것, 아역 연기자의 선정에는 많은 요인이 관여되므로 아동의 낙담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 배역의 변화가 자주 있음을 고려할 것,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점을 숙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연기자 조합관계자는 아동이 출연하는 배역에서 '영화는 모방의 예술'이라는 원칙을 인용하면서 대본이 교육학자에 의해 자세히 조사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작업시간이 매일, 주간, 연간을 기초로 출석 및 결석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당성에 대한 문서가 갖춰져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촬영시 재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잘 기획되어야 할 것, 감독이 대화시 아역 연기자를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 아역 연기자 중심으로 환경을 조성할 것, 아동참여활동에 차별적 요소가 없을 것을 제언하였다.

노동당국자들은 아역 연기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지도 원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관찰되어야 하며, 아동이 연기를 비즈니스의 일종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역 연기자들은 작업시간이 너무 길고 불규칙하고, 수업시간과 겹쳐 정규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공부나 숙제를 할 기회 및 시설이 없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아동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지적에 덧붙여 아역 연기자를 고용한 회사나 대리인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다른 점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 결 론

아역 연기자들의 학습권, 노동환경, 배역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아동의 노동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환경이 1990년대 들어 해외에서 정비되고 있으며, 한국도 2000년대 이후 이에 발맞추어 공공영역에서의 법적, 제도적 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아역 연기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러 행정부처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작업시간, 학교교육과의 병행규정, 기타 신체적·정서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이 국제적인 변화와 발맞추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제작사 대 아역 연기자 및 부모간의 관행적 계약을 넘어 아역 연기자

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기준법안’이 국내에도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안에는 아역 연기자의 전체 수입 중 일정액을 신탁하는 내용, 아역 연기자의 연령별 촬영 시간 및 야간 촬영 관련 규정, 촬영으로 인한 결석과 수업 손실에 대한 보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촬영 전후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평가 및 관리, 부모와의 관계 및 아역 연기자 진로와 관련된 정기 상담 제공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 영화·아역 연기자·청소년 연기자·법적 고려사항·제도적 고려사항.

### References

- 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Report of the Experts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Geneva: ILO;2010.
-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2. New York: UN;1989. Available from URL <http://www.un.org/en/globalissues/briefingpapers/childLabor/intlconvs.shtml>.
- 3)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Worldwide Movement Against Child Labor.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s. Geneva: ILO;2007.
- 4)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Report of the Pilot Research Project on Children Working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Geneva: ILO;2011
- 5)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1987.
- 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The Labor and Standard Act. Seou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2008.
- 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Division of Youth Policy.** 4th Youth Policy (revision, supplement) General Planning.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2010.
- 8)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Rules about Broadcasting Deliberation Some Revision. Seoul: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2012.
- 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Some Revision of Youth Protect Act.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2012.
- 10) **Kim SK, Kim YW, Lee HN.** Result Report of Monitoring Work abou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2010.
- 11) **State of California.** Senate Bill No.210. Chapter 667. Sacramento: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2003.
- 12) **State of California.** California Child Labor Laws. Sacramento: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2000.
- 13) **European Unions.** EU Council Directive 94/33/EC of 22 June 1994 on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at work. Bruxelles: European Parliament;1994.
- 14) **Ofcom.** Broadcasting Codes. Available from URL: <http://stakeholders.ofcom.org.uk/broadcasting/broadcast-codes/>.
- 15) **BBC.** Editorial Guidelines. Section 9: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Available from URL: <http://www.bbc.co.uk/editorialguidelines/page/guidelines-children-introduction/>.